

기간별 분석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 추정

오웅락* · 김정훈** · 이유선*** · 노희천****

〈요 약〉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감사인의 자유선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고, 독립성의 개선 기대와 교체에 따른 전문성 하락의 우려 속에 2020년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의 지정이 개시되었다.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를 2010년 이전 유사한 교체제도 하의 표본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사실이 확정된 시점부터 실제 적용 직전까지 기간별로 감사인의 사전적 반응과 감사품질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019년말 현재 6년 이상 동일인 계속감사가 수행된 상장기업을 주기적 지정제의 최초 적용 예상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감사품질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여 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반응을 파악하였다. 과거 10년간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기업별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고, 전년대비 그 변동분을 측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기간별 감사품질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의 적용 예상 기업은 아닌 기업에 비해 2018년에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를 보였고, 2019년에는 전체 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2018년의 표본에서 Non-Big4 감사인에서만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나타나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의 개선 폭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지정 여부가 통보된 2019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하여 실제 지정 대상회사의 유의한 감사품질 개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사전 효과로 장기간 계속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제도 시행에 임박하면서 장기 계속감사로 저하된 독립성이 개선되고, 향후 교체 주기 내에서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품질개선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 시 주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주제어〉 주기적 지정제, 감사품질, 독립성, Non-Big 4, 재량적 발생액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oor@ssu.ac.kr,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zeed822@gmail.com, 주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2yyus@naver.com, 교신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rhc0401@ss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9월 22일

1차수정일 2020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28일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감법의 개정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에 의한 감사품질의 개선 효과가 제도 도입의 확정 시점부터 감사인의 강제적 교체 직전까지 사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환경 하에서 주기적 지정제 최초 적용 예상 기업(이하 ‘적용예상기업’)의 감사품질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즉 장기간 계속감사가 유지되고 있는 감사인의 행동과 감사노력에 본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통제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의 개선을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¹⁾를 대상으로 하며, 증선위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10월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 등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²⁾ 총 220사에 사전통지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도입 확정 시점부터 감사인 교체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감사인의 반응에 따른 감사품질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간 누적되어 온 회계 이슈를 교체 직전 연도에 일시적으로 반영할 경우 잠재적인 감사실패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감사인들은 제도 도입이 확정된 직후부터 강화된 감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감법의 국회 가결 이후 감사인 교체 직전까지의 기간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감사를 유지한 Non-Big4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의 이유로 인해 독립성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아,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개선이 더 큰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며, 과거 10년간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에 근거하여 개별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한다.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확정된 2017년 이전부터 2019년 말까지 구간 별로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분을 측정하여 적용예상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감사품질의 변동수준이 상이한지 검증한다. 또한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2019년 실제 지정 대상회사와 지정이 연기된 회사 간에 감사품질의 변동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2)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중 다른 직권 지정사유가 없는 상장사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은 아닌 기업에 비하여 2018년 표본에서 전년 대비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적용대상기업의 감사인(이하 ‘적용대상감사인’)이 본 제도의 도입 확정 시점부터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감사인 교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며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적용대상기업의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확인된 2018년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Non-BIG4 감사인에서만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셋째, 2019년에 최초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 통지를 받은 기업(이하 ‘적용확정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정이 연기된 기업보다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첫째,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제교체나 여타 지정제도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에 대한 감사인의 실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개별 기업 단위의 시계열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고 그 변동액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횡단면 분석에 기반한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감사품을 측정하였고,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의 변동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시점별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인의 반응과 감사품질의 변동을 도출하였다.

셋째, 주기적 지정제의 감사품질 제고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사인의 구분에 따라 품질의 개선의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해당 방법론을 확대하면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개선 정도와 그 기대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지정 감사인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주기적 지정제 및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세부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표본선정절차를 설명하였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2015년 대규모의 회계분식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인의 주기적 교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하기 위한 외감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다. 증

선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며,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³⁾을 기준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외감법에 따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2019년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2021년)시까지 지정이 연기되며 2022년부터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된다.

<표 1>은 주기적 지정제 관련 주요 경과와 내용을 나타낸다. 2016년 11월에 ‘6년+3년’을 기본으로 하여 상장회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외부감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며, 2017년 9월 ‘6년+3년’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포함한 외감법이 가결됨으로써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표 1〉 주기적 지정제 관련 주요 경과

시기	주요 경과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발생
2016년 11월	주기적 지정제 국회 발의
2017년 4월	금융위원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 외부감사법) 가결
2018년 4월	금융위원회 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부감사법) 시행
2019년 3월	금융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2019년 6월	금감원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 발표
2019년 8월	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설명회 개최
2019년 10월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선정 및 통지
2020년 1월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완화방안 발표

주기적 지정의 면제조항으로서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감리를 신청할 수 있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정 연도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가 집중될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확보가 어렵고, 지정 해제 이후 자유선임에 따른 수주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분산지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금감원이 2019년 6월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행 첫해에는 자산 1,9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220여사가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다음연도에는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하며,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3) 지정대상선정일 :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외감규정 §12조⑧)

지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기적 지정 시행 전에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정을 연기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씩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있어, 2019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2021년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

2019년 10월 금감원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 1,826억 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통지하였다.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 등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중 다른 직권 지정사유가 없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주기적 지정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에 있어,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 감사인의 강제적 교체 제도, 교체 감사인의 지정 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계속감사기간 지속에 따른 감사품질의 저하를 주장한 연구로 DeAngelo(1981)는 계속적으로 동일 감사인이 유지되는 기업은 감사인에게 영구적으로 감사보수를 지급하므로 감사인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독립성이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Davis et al.(2008)은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과 예측오차를 사용하여 감사인의 감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무보고의 재량성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이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Kealey et al.(2007)은 강제적으로 교체된 Arthur Anderson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감사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후임 감사의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후임 감사인 입장에서는 전임 감사인의 감사계약기간이 길수록 감사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박종성과 최기호(2001)는 재량적 발생액과 감리지적을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전문성이 증가되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Johnstone et al.(2001)은 감사인의 감사기간이 짧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하면서 감사기간이 길수록 감사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Geiger and Raghunandan(2002)은 감사 계약 초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의 유지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4) 최초 연도에는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가 많은 이유로 자산의 규모 순으로 우선 배정하는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 원 이상인 상장사(220사)가 지정되었고,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 재무제표 기준)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

감사기간이 지속될수록 명성의 유지 목적 차원에서 독립성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Gul et al. (2009)은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감사품질이 낮은 것은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임영덕(2006)은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권수영 외(2008)는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산업전문성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계속감사기간이 길고 산업전문성이 있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영한 외(2010)의 연구에서도 계속감사기간과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계속감사기간은 감사인의 학습효과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감사인의 강제교체 필요성에 대한 연구로서, Dopuch et al.(2001)은 계속감사에 따른 독립성 하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잘못된 감사의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강제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yers et al.(2003)은 감사인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강제교체가 이루어지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반대로 계속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감사품질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강제교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에서는 최종감사에 의한 감사품질의 향상을 근거로 대부분 강제적 교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선미와 유승원(2010)은 한시적으로 감사인의 강제적 교체가 적용된 2006년-2007년에 감사인을 변경한 상장법인 중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 강제교체와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익 상향조정 기업에 대해 감사인 강제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근식 외(2014)는 2006년-2009년의 피감대상기업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으로 측정한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와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다른 연도보다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이는 감사인 교체 여부를 감사인이 미리 인지한 후 마지막 감사시점에서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장석진 외(2018)는 2006년에 도입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감사인이 강제 교체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교체되기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고, 자율적으로 교체한 기업보다 강제로 교체한 기업의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가설을 일부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감사인 지정제도 하에서는 지정된 감사인이 수임 유지에 대해 자유롭기 때문에 감사시간 동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익조정에 대한 경영자의 관여가 제약될 것이므로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정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지지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안영균과 이재경(2004)은 감사인 지정 전년도와 지정년도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였고, 감사인 지정년도의 이익조정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원과 이재경(2013)은 기업공개 시 감사인 지정의 경우를 대상으로 실증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인이 지정된 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종은 외(2017)는 상장예정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에 감사인이 지정되면, 지정 후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된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수준이 감사인 지정 전에 비하여 낮아져서 감사인 지정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지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지정된 감사인들의 감사는 대부분 초도 감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감사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김진화와 정재욱(2009)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로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규제를 받는 기간에 상장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자유수입제 기간에 신규 상장한 기업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감사인의 강제적 지정 또는 교체로 인한 선임초기의 전문성 부족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최성호 외(2015)는 감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는 기간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상장 전 이익조정이 자유수입제 기간 대비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감사인 지정 이후 자유수입으로 전환되는 첫 회계연도에 지정 감사인을 계속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에 비해 상장 전 이익을 유의하게 상향 조정한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지정 기간 종료 후 감사계약을 유지하려는 지정 감사인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3. 가설의 설정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취지는 계속감사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계속감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약화와 전문성 강화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이므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기적 지정제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입장은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된 정책 결정 기구나 감독당국은 최근 국내 회계분식 사건들의 원인을 동일한 회계법인과의 장기 수임계약에서 찾고 있다. DeAngelo (1981)의 주장과 같이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독립성이 저하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의 독립성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며,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기적 지정제의 실제 작동원리는 감사인의 강제교체와 지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에 감사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었고(김선미와 유승원 2010 ; 신근식 외 2014 ; 장석진 외 2018 등), 박기태와 전규안(2019)은 지정감사 종료 후 지정 감사인의 자유수임 계약이 금지됨에 따라 감사인 교체 전 최종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품질제고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와 유사

하게 계속감사기간이 강제적으로 단절되어 감사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엄격한 감사를 수행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후임 감사인에 의한 감사품질의 압박도 주기적 지정제가 작용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강제적으로 지정된 후임 감사인은 전체 감사계약기간이 3년으로 확정되므로 경제적인 유인이 낮고, 전기 감사인의 감사실패 사항들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외감법의 개정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교체된 지정 감사인에 의해 과거 중대한 감사실패가 발견될 경우 전기 감사인은 소송이나 감독당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전기 감사인은 후임 지정 감사인에 의한 감사실패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인 교체 전 감사노력을 증가시킬 유인을 가지고 있다. 다만 사업구조가 복잡한 대규모 기업 등의 경우에는 후임 감사인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낮아 전기의 감사실패 사항이 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고려한 전기 감사인은 감사노력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감사인의 반응과 감사노력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교체 주기에 따른 감사품질의 추세를 이해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교체에 대한 김선미와 유승원(2010), 박기태와 전규안(2019) 등의 연구에서는 최종감사의 품질을 보고하여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년 9월 국회 가결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확정된 시점부터 실제 감사인 교체시점까지의 3년간 감사품질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강제적 교체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견해에서는 적용예상감사인이 주기적 지정제의 가결 사실에 반응하여 그 직후부터 보수적 감사를 수행하였을 것이고, 감사인이 교체되는 2020년 전까지 안배하여 잠재적 이슈사항을 해소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소 6년 이상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으로, 감사인 입장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이슈사항을 최종 감사 연도에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한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년도의 전기 재무제표가 제시되므로 재작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감사인은 확보된 시간 내에서 보수적 감사를 수행할 유인이 있다. 장기수임 감사인의 교체 압박에 따른 독립성 강화와 후임 감사인의 낮은 전문성에 따른 감사노력 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주기적 지정제 적용 직전까지 적용예상기업은 아닌 기업과 감사품질 변동에 차이가 없다.

Heninger(2001)은 대규모의 감사인은 업계 내에서의 명성을 관리하고자 교육훈련과 인적관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소송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므로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Chi et al.(2012)은 Big4 파트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피감사 기업에 대하여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Non-Big4 파트너는 중요도 높은

고객에 대하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장기간 계속감사를 유지한 Non-Big4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매출의 비중으로 인해 경제적 유착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으로 감사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교체 직전까지 더 강화된 감사수행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 차이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최국현(2007)은 Big5 제후 회계법인, 국내 대형회계법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유가증권 시장 내 기업의 감사품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Big5와 Non-Big5 감사인 간에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인태 외(2009)는 기업규모에 따라 높은 감사품을 보이는 회계법인의 그룹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Big4의 감사품질보다 높고, 자산규모 5,0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감사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감사품질이 높다는 입장에서는 장기간 Non-Big4 감사인에 의해 감사가 수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관심과 감사품질 개선 기대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정 감사인으로 주기적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Non-Big4 감사인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품질 개선이 있을 것이다. 또한 Big4 감사인의 품질관리가 더 양호하다는 가정 하에 서는, Non-Big4 감사인이 Big4 감사인으로 지정 교체될 경우 Big4 감사인의 까다로운 내부 정책으로 인해 기초 잔액과 기존 수익인식 방식 등에 대한 감사실패 지적이 우려될 수도 있다. Big4 감사인에 의해 기존 감사실패가 제기된다면 손해배상, 외부 감리 실시, 평판 하락 등의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게 될 것이므로 Non-Big4 감사인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시점까지 감사노력을 증가시키거나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할 유인을 갖는다.

경제적 의존도에 따른 독립성 훼손, 내부 품질관리 수준 등에 근거하여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품질의 개선이 감사인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과 아닌 기업의 감사품질 변동의 차이는 감사인 유형과 관련이 없다.

<표 1>과 같이 금감원은 2019년 6월에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자산규모에 따른 최초 지정 기업의 현황을 제시하였고, 8월에 ‘주기적 지정제 설명회’를 통해 잔여 감사계약에 따른 지정 연기, 직권지정 사유와의 중복 배제 등을 안내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기업 중 자산규모 1,900억을 초과하는 6년 연속 자유선임 감사인은 자신이 최초 교체 대상임을 인지하였고, 그해 10월 220개 회사에 대해 실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의 선정 및 통지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도입 확정, 세부 규정의 공시, 실제 시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간별 감사품질의 변동을 통한 감사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가설 1과 가설 2는 2017년 9월에 ‘6년+3년’ 교체의 원칙이 확정된 이후 감사품질 측정을 통한 관련 감사인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며, 추가 가설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공표와 최초 지정 기업의 공지에 따른 해당 감사인의 반응을 보고자 한다. 즉 2019년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 통지를 받은 적용확정기업은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품질개선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으로서 2017년부터 사전적으로 안내하여 잠재적 이슈사항을 해소하였거나, 대상회사 통지 시점인 2019년 10월에 감사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용확정기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이전까지 적용예상 감사인으로서 반응하였던 감사인에 대해 불확실성의 해소 및 최종감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감사품질의 추가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장석진 외(2018)는 감사인 교체 직전의 최종감사는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표본의 제도적 환경이 다르지만 이는 상기의 예상을 뒷받침한다.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적용확정기업은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해 감사품질이 개선된다.

III. 연구모형과 표본선정

1. 연구모형

가.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이용한다.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은 Jones모형(1991)에 기초한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한 추정은 식 (1)과 같으며, 비재량적 발생액의 회귀계수 추정은 해당 연도가 아닌 과거 10년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별로 산출되는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10개이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동종업종별 구분으로 분석하여 해결하였다. 따라서 ‘산업별-시계열’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비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가설의 연구모형에서 산업 더미를 생략한다.

$$TA_t/A_{t-1} = \beta_1(1/A_{t-1}) + \beta_2[(\Delta SALE_t - \Delta REC_t)/A_{t-1}] + \beta_3(PPE_t/A_{t-1}) + \varepsilon_t \quad (1)$$

여기서,

- TA_t = 총 발생액(순이익-영업현금흐름);
 A_{t-1} = 기초총자산;
 $\Delta SALE_t$ = 매출액 변화분(매출액-전기매출액);
 ΔREC_t = 매출채권 변화분(매출채권-전기매출채권);
 PPE_t =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

나. 실증분석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외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주기적 지정제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 1을 통해 분석한다.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DA)이 아닌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식 (2)를 기본 모형으로 설정한다.

$$ChDA_t = \beta_0 + \beta_1 PAD_t + \beta_2 BIG4_t + \beta_3 SIZE_t + \beta_4 LEV_t + \beta_5 GRW_t + \beta_6 ROA_t + \beta_7 lagTA_t + \varepsilon_t \quad (2)$$

여기서,

- $ChDA_t$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 표본;
 $E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2019년 기준 6개 연도 이상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F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중 적용확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BIG4_t$ =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SIZE_t$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GRW_t = 매출액성장률[(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전기총자산);
 $lagTA_t$ = 전년도 총 발생액;

감사인 유형에 따라 제도 변경에 어떻게 차별적 반응을 보이는지 가설 2에서 분석한다. 동일하게 재량적 발생액(DA)이 아닌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며 다음의 식 (3)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한다.

$$ChDA_t = \beta_0 + \beta_1 EPAD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ROA_t + \beta_6 lagTA_t + \varepsilon_t \quad (3)$$

여기서,

- $ChDA_t$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E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2019년 기준 6개 연도 이상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BIG4_t$ =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SIZE_t$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GRW_t = 매출액성장률[(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전기총자산) ;

$lagTA_t$ = 전년도 총 발생액 ;

먼저, 가설 1(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은 아닌 기업과 감사품질 변동에 차이가 없다.)을 검증하기 위한 관심변수는 EPAD로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으로 2019년말 현재 6개 연도 이상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감독당국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일인 2019년 11월 이전에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정을 연기한다고 시행 직전인 2019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포함된 외감법이 2017년 9월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에는 해당 법률안에 잔여 감사계약이 존재할 경우 지정의 적용 시점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시 동일 감사인을 6년 이상 자유선임한 기업은 외감법 시행 즉시 우선적으로 주기적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지되었다. 따라서 2019년 말 현재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기업을 주기적 지정제의 최초 적용 대상으로 보아 해당 감사인의 반응과 감사품질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에 분산시행으로 실제로는 220개 기업만이 최초 지정 되었으나, 지정연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주기적 지정에 따른 교체가 임박한 감사인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잠재적인 적용 기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삼았다.

식 (2)를 통한 회귀분석에서 $EPAD_t$ 변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면,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은 아닌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20년 감사인을 강제교체 할 가능성이 높은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은 아닌 기업에 비해 사전적으로 잠재적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과 아닌 기업의 감사품질 변동의 차이는 감사인 유형과 관련이 없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식 (3)의 식을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 표본으로 나누어 검증한다.

가설 3(적용확정기업은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해 감사품질이 개선된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식 (2)의 식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으로 한정하여 주기적 지정제 적용확정기업과 미확정 기업의 감사품질의 개선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식 (2)와 식 (3)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변수와 감사품질 관련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먼저, 경영자의 회계선택(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특성은 크게 기업의 규모, 수익성, 위험성 등이 있다(Gunny 2010 ; Cohen and Zarowin 2008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으로 구해진 기업규모(SIZE)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안정성이 높고, 정치적비용(political cost)이 크기 때문에 이익조정 유인이 낮을 것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총자산이익률(ROA)과 매출액성장률(GRW) 등이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수익성이 높을수록 다음연도 성과평가를 고려하여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할 유인이 적어지고,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적으므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Gunny 2005 ; 기현희와 김민철 2010 등). 기업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부채비율(LEV) 변수이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채계약 가설에 따라 이익조정과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다(Watt and Zimmerman 1986).

모형 식 (2)에서는 식 (3)과 달리 감사품질을 대용치(Proxy)인 감사인 유형(BIG4) 변수를 모형식에 추가하였다. 감사인의 유형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련성은 국내외 선행연구 간에 혼재된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Becker et al.(1998)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은 Non-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간에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총 발생액의 반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발생액(lagTA) 변수를 모형식에 추가하였다.

2. 표본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나 산업별-시계열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재무자료는 Fn-Gui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상장 기업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 (1) 금융업
- (2)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 (3) Fn-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
- (4) 전년도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금융업은 재무제표 양식과 계정과목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표본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과 Fn-Guide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이기 때문에 전년도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전기와의 차이를 통한 기간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2016년 자료부터 4년간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매년 동일한 1,415 기업-연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표본은 5,660 기업-연도이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른 최초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은 감사인이 교체되는 2019년 이전에 사전적으로 잠재적인 이슈사항을 반영해 나갔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주기적 지정제 확정시점인 2017년부터 연도별 재량적 발생액(DA)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재량적 발생액(DA)의 평균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은 2017년에 평균적으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이 나타났고, 2018년부터는 평균적으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이 나타났다.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이 아닌 표본의 경우, 2019년에만 평균적으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냈다.

<표 2> 연도별 재량적 발생액(DA) 평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EPAD_i=1$)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이 아닌 표본($EPAD_i=0$)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DA_i	0.008	-0.001	-0.024	0.000	0.000	-0.032
N	595			820		

주1) 변수의 정의 :

DA_i =재량적 발생액(Dechow et al. 1995) ;

<표 3>의 Panel A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의 연도별 차이분석을 나타내며, Panel B에서는 연도별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의 추이를 감사인 유형별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DA)이 아닌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을 이용한다. 이에 시점별로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나누어 쌍체 차이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는 Panel A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은 2017년에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고, 2018년과 2019년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적용예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표본은 2017년에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2019년에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B의 결과를 살펴보면 BIG4 감사인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과 적용예상이 아닌 기업 모두 평균의 방향성이 같았다. 하지만 Non-BIG4 감사인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은 2018년과 2019년에 음(-)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이 나타났고 주기적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이 아닌 표본에서는 2019년에만 음(-)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을 나타냈다.

〈표 3〉 연도별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_t$) 분석

Panel A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_t$)의 연도별 차이분석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EPAD_t=1$)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이 아닌 표본($EPAD_t=0$)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mean (t-Value)			mean (t-Value)		
$ChDA_t$	0.002 (0.52)	-0.009 (-2.04 ^{**})	-0.022 (-4.28 ^{***})	0.010 (1.65 [*])	0.000 (-0.01)	-0.033 (-5.24 ^{***})
N	595			820		

Panel B : 감사인 유형간 연도별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_t$) 평균

	BIG4						Non-BIG4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EPAD_t=1$)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이 아닌 표본($EPAD_t=0$)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EPAD_t=1$)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이 아닌 표본($EPAD_t=0$)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ChDA_t$	0.002	-0.002	-0.019	0.014	-0.015	-0.011	0.002	-0.016	-0.026	0.007	0.010	-0.044
N	300	300	300	354	328	282	295	295	295	466	492	538

주1) 변수의 정의 :

$ChDA_t$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제가 2017년 9월에 가결됐지만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은 모두 반기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기중에 소급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 최초 개시되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감사품질의 개선이 있었으며, 이런 차이는 Non-BIG4 감사인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에는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과 아닌 기업에서 모두 유의한 감사품질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장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 표준감사시간제와 2021년 이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의 사전적 반응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표 4>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려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분석 기간은 주기적 지정제가 확정된 2017년부터이나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2016년도 포함하여 전체 표본은 5,660 기업-연도이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ChDA$)의 평균값(중위수)은 -0.006(-0.003)으로 나타난다.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은 전체 표본의 42%이며,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은 전체표본의 45%로 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술통계량(N=5,66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ChDA_t$	-0.006	0.155	-2.723	-0.003	1.800
$EPAD_t$	0.421	0.494	0	0	1
$FPAD_t$	0.094	0.292	0	0	1
$BIG4_t$	0.451	0.498	0	0	1
$SIZE_t$	26.306	1.511	22.789	26.006	33.497
LEV_t	0.426	0.202	0.027	0.432	0.996
GRW_t	0.108	0.977	-0.980	0.035	56.044
ROA_t	0.007	0.123	-1.266	0.021	1.823
$lagTA_t$	-0.029	0.115	-1.451	-0.029	2.012

주1) 변수의 정의 :

$ChDA_t$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

$E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2019년 기준 6개 연도 이상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BIG4_t$ =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SIZE_t$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GRW_t = 매출액성장률[(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전기총자산) ;

$lagTA_t$ = 전년도 총 발생액 ;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이며, 기간별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을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설 1의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표 5>를 살펴보면, F-Value는 모두 1% 이내에서 유의하여 식 (2)의 모형은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 R²는 연도별로 각각 0.678, 0.579, 0.690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5) <표 7>의 결과에서 모형 1부터 3까지 각 변수의 VIF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생략한다.

〈표 5〉 주기적 지정제의 적용예상기업의 사전적 감사품질 개선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ChDA_t = \beta_0 + \beta_1 EPAD_t + \beta_2 BIG4_t + \beta_3 SIZE_t + \beta_4 LEV_t + \beta_5 GRW_t + \beta_6 ROA_t + \beta_7 lagTA_t + \varepsilon_t \quad (2)$$

Variable	ChDA		
	2017	2018	2019
	회귀계수(t-Value)	회귀계수(t-Value)	회귀계수(t-Value)
Intercept	0.143(3.05)***	0.086(1.67)*	0.04(0.82)
$EPAD_t$	-0.002(-0.48)	-0.009(-1.82)*	-0.003(-0.65)
$BIG4_t$	-0.007(-1.35)	-0.014(-2.48)**	0.003(0.61)
$SIZE_t$	-0.007(-3.71)***	-0.004(-2.18)**	-0.004(-1.85)*
LEV_t	0.035(2.76)***	0.040(2.84)***	-0.002(-0.12)
GRW_t	-0.021(-4.29)***	0.005(1.00)	0.01(2.47)**
ROA_t	0.651(31.61)***	0.577(22.87)***	0.669(33.20)***
$lagTA_t$	-0.924(-45.62)***	-0.88(-39.35)***	-1.092(-48.72)***
Adj.R ²	0.678	0.579	0.690
F-Value	427.00***	279.05***	451.13***
N	1,415		

주1) 변수의 정의 :

$ChDA_t$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

$E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2019년 기준 6개 연도 이상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BIG4_t$ =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SIZE_t$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GRW_t = 매출액성장률[(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전기총자산) ;

$lagTA_t$ = 전년도 총 발생액 ;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속변수와 관심변수 EPAD의 계수는 2018년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결과로 나타나, 2018년에만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은 아닌 표본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일인 계속감사로 회계적 이슈사항이 누적되었다면 2019년 최종감사에 일시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수치의 평균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년도의 비교 재무제표가 전기 재무제표로 제시되므로 재무제표의 재작성의 발생

할 경우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감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8년말 잔액도 전기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인이 교체되는 2019년 이전까지 안배하여 잠재적인 이슈사항을 해결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나,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확정된 2017년 9월에는 검토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소급반영이 어려워 2018년부터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둔 감사품질의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에는 주기적 지정제 적용 예상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채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EPAD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도입⁶⁾, 차기 주기적 지정 적용예상감사인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는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표본의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는 2018년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가설 2는 2018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표 6>에 따르면, F-Value는 모두 1% 이내에서 유의하여 식 (3)의 모형이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Adj R²는 각 표본 별로 0.755, 0.493으로 나타났다.

<표 6>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의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 개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ChDA_t = \beta_0 + \beta_1 EPAD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ROA_t + \beta_6 lagTA_t + \varepsilon_t \quad (3)$$

ChDA		
Variable	BIG4	Non-BIG4
	회귀계수(t-Value)	회귀계수(t-Value)
Intercept	0.038(0.88)	0.152(1.29)
EPAD _t	0.008(1.49)	-0.025(-2.90)***
SIZE _t	-0.003(-2.03)**	-0.007(-1.47)
LEV _t	0.034(2.36)**	0.043(1.91)*
GRW _t	-0.022(-2.56)**	0.011(1.64)
ROA _t	0.530(15.83)***	0.604(16.68)***
lagTA _t	-0.880(-39.74)***	-0.868(-23.50)***
Adj.R ²	0.755	0.493
F-Value	322.58***	128.82***
N	628	787

6) 금감원 전자공시(<http://dart.fss.or.kr>) 자료에 근거한 2019년까지의 상장기업 평균 감사시간은 1,519시간(2016), 1,614시간(2017), 1,795시간(2018), 2,157시간(2019)으로 추정되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2019년에 감사시간이 큰 폭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주1) 변수의 정의 :

$ChDA_t$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

$EPAD_t$ =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2019년 기준 6개 연도 이상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SIZE_t$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GRW_t = 매출액성장률[(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전기총자산) ;

$lagTA_t$ = 전년도 총 발생액 ;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속변수와 관심변수 EPAD의 계수는 Non-Big4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의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는 상당부분 Non-Big4 감사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장기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Non-Big4는 본 제도의 시행 전까지 독립성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감사품질의 개선 폭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Big4 지정 감사인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위험관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7>은 식 (2)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가설 3의 실증분석결과를 나타낸다. 2019년 10월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의 선정 및 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설 3은 2019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표 7>에 따르면, F-Value는 모두 1% 이내에서 유의하여 식 (2)의 모형이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Adj R²는 0.582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와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표본 중에서 적용확정기업을 나타내는 FPAD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⁷⁾ 가설 1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적용대상기업은 감사인 교체 직전까지 감사의 보수성을 사전적으로 증가시키므로 2018년에만 유의적인 감사품질의 개선이 확인되었고, 2019년에는 전체 기업표본에 대하여 감사품질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용대상기업의 사전적인 감사품질 개선 경향을 고려하면 2019년에 최초 지정이 확정된 기업에 의한 차별적인 반응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설 1의 2017년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논리로 검토보고서 제출 후 결산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량적 발생액의 급격한 감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7) <표 7>의 결과를 감사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FPAD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주기적 지정제 적용확정기업과 적용연기 기업 간 감사품질의 개선 비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ChDA_t = \beta_0 + \beta_1 FPAD_t + \beta_2 BIG4_t + \beta_3 SIZE_t + \beta_4 LEV_t + \beta_5 GRW_t + \beta_6 ROA_t + \beta_7 lagTA_t + \varepsilon_t \quad (2)$$

Variable	ChDA
	2019
	회귀계수(t-Value)
Intercept	0.072(1.07)
<i>FPAD_t</i>	0.004(0.48)
<i>BIG4_t</i>	0.008(1.05)
<i>SIZE_t</i>	-0.005(-1.90)*
<i>LEV_t</i>	0.009(0.47)
<i>GRW_t</i>	-0.008(-0.94)
<i>ROA_t</i>	0.689(19.69)***
<i>lagTA_t</i>	-1.009(-24.32)***
Adj.R ²	0.582
F-Value	119.12***
N	595

주1) 변수의 정의 :

$ChDA_t$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DA_t - DA_{t-1}$) ;

$FPAD_t$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예상기업 중 적용확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

$SIZE_t$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_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GRW_t =매출액성장률[(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ROA_t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전기총자산) ;

$lagTA_t$ =전년도 총 발생액 ;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V. 결 론

2015년 국내에서 대규모의 회계분식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관련 당국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장기 계속감사가 그 주요 원인이라는 공감을 하였고, 2017년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2019년 1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분산시행 등의 사유로 220개의 기업만이 최초 지정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실제로 감사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고, 제도의 도입 확정 시점부터 감사인 교체 직전까지 구간별로 주기적 지정제 적용에 상기업의 감사품질 변동을 측정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과대한 감사비용, 전문성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인 현재까지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를 다루었으나, 대부분 2010년 이전 표본을 바탕으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는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에 해당한다(장석진 외 2018 ; 이승현 외 2019 ; 이민우와 정기위 2019 등). 본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과 실제 감사품질의 개선이 관찰된다면 향후 교체 주기 내에서 감사품질의 하방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간 별로 전년 대비 감사품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분을 종속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최초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은 아닌 기업에 비하여 2018년에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장기간 동일인 계속감사기업에 대한 독립성의 개선을 의미한다. 2017년 9월에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확정되었으나, 검토보고서 제출 후 결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2017년 감사에서 일시적인 보수성 증가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주기적 지정제 적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업 전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도입, 2021년 이후 지정 예상 기업의 감사노력 강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기적 지정제 대상 기업에 대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한 감소가 확인된 2018년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Non-BIG4 감사인에서만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즉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은 Non-BIG4 감사인 기업에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장기간의 경제적 의존 등의 이유로 약화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본 제도로 인해 개선됨을 의미한다.

셋째, 2019년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 통지 받은 기업은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품질개선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으나,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에 따른 장기간 계속감사기업의 독립성 개선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정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간별 감사인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고 그 변동액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횡단면 분석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여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였고,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 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기업 전체적인 감사품질 제고 효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사인의 구분에 따라 품질의 개선의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재량적 발생액은 회귀모형에 의한 추정에 따른 것이므로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에 반영되지 못한 생략 변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 실행의 이전 단계에서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을 확인한 것으로서, 감사인의 유형 외에도 감사품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정된 후임 감사인의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추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영 · 임영덕 · 마희영. 2008.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강제교체 감사인의 감사보수 분석”. 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 1-38.
- 기현희 · 김민철. 2010. “기업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 197-217.
- 김선미 · 유승원. 2010. “감사인 자율교체와 재량적 발생액 질의 변화”.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 95-122
- 김용원 · 이재경. 2013. “감사인 지정제도가 상장예정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8권 제3호 : 409-441.
- 김진희 · 정재욱. 2009.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규제효과”.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2호 : 687-710.
- 박기태 · 전규안. 2019. “지정감사 제도변경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지정감사 후 첫 번째 자유수임 계약 시 기존 지정감사인의 선임을 금지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 153-185.
- 박종성 · 최기호. 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 1-25.
- 신근식 · 조형진 · 최종학. 2014. “감사인 교체와 감사인의 보수적 회계감사”. 회계와 감사연구 제59권 : 179-210.
- 안영균 · 이재경. 2004. “감사인 지정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89-115.
- 이민우 · 정기위. 2019.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효과 : 감사인 독립성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4호 : 123-166.
- 이승현 · 조성표 · 이기세. 2019. “6년 후 감사인 교체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감사품질”. 국제회계연구 : 189-214.
- 이영한 · 김태동 · 김성환. 2010. “Big4 감사인 여부와 계속감사기간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 33-62.
- 이종은 · 문해원 · 지가영. 2017.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제42권 제3호 : 105-155.
- 임영덕. 2006.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 183-213.
- 장석진 · 정도진 · 김중현. 2018. “동일 감사인 6년 강제교체제도는 실패한 제도인가? : 강제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 97-125.
- 최국현. 2007. “감사인 규모 유형별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4호 : 1711-1746.
- 최성호 · 김인숙 · 최 관. 2015.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제40권 제6호 : 283-321.
- 황인태 · 강선민 · 정도진. 2009.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 1-34.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 1-24.
- Chi, W., Douthett Jr. E. B., and Lisic, L. L. 2012. Client Importance and Audit Partne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 : 320-336.
- Cohen, D., A. Dey, and T. Lys. 2008.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Sarbanes Oxley periods. *The Accounting Review* 82(3) : 757-787.
- Davis, L. R., B. Soo, and G. Trompeter. 2008. Auditor Tenure and the Ability to Meet or Beat Earnings Forecasts. Boston Colleg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 : 183-19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Review* 70(April) : 193-225.
- Dopuch, N., R. King, and R. Schwartz. 2001.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Retention and Rotation Requir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 93-117.
- Geiger, M., and K. Raghunandan. 2002.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20(1) : 67-78.
- Gul, F. A., S. Y. K. Fung, and B. Jaggi. Earnings Quality : Some Evidence on the Role of Auditor Tenure a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7(3) : 265-287.
- Gunny, K. 2005.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_____. 2010.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using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and future performance : Evidence from meeting earnings benchmark.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7(2): 855-888.
- Heninger, W.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or litigation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6(1) : 111-26.
- Johnstone, K. M., M. H. Hutton, and T. D. Warfield. 2001.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dependence Risk : Frame for Analysis. *Accounting Horizons* 15(1) : 1-18.
- Kealey, B. T., Ho Young Lee. & M. T. Stein.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Firm Tenure and Audit Fees Paid to Successor Auditors : Evidence from Arthur Anderse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6(2) : 95-116.
- Myers, J., L. A. Myers, and T. c.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3) : 779–800.

Watts, R. L., and J. L. Zimmerman. 1986. Towards a positive theory of the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Review* 53(1) : 112–134.

Estimation of Audit Quality Improvement by Period after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Adoption

Oung Rak Oh* · Jung Hoon Kim** · Yu Sun Lee*** · Hee Chun Roh****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the AEASC) in 2017 introduced a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that limits the period of free appointment of auditors to six years ; and the designation of auditors began in 2020 amid expectations of improved independence and concerns over a drop in professionalism caused by replacement.

Unlike previous studies under a similar auditor replacement system before 2010,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auditors' pre-response and audit quality for each period from the time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as confirmed to the moment immediately before its actual application.

As of the end of 2019, listed companies that have been subject to continuous audits of the same auditor for over 6 years were divided into those that are expected to be applied for the first time to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 and differentiated responses to the system were identified by measuring the audit quality as a discretionary accruals.

Discretionary accruals for each company were estimate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over the past 10 years ; and the changes were measur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o derive changes in audit quality for each period from 2017 to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nies that are expected to apply the periodic designation are compared with those of non-applying,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8 ; and discretionary accruals of all listed companies decreased in 2019, so no discrimination was found.

Second, the 2018 sample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discretionary accruals was found only in Non-Big 4 auditors, which indicated that the extent of improvement in audit quality varies depending on the auditor.

* Professor, School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oor@ssu.ac.kr, Co-author

** Ph.D. Candidate, School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zeed822@gmail.com, First Author

*** Ph.D., School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2yyus@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School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rhc0401@ssu.ac.kr, Co-author

Third, the analysis of 2019 show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audit quality of the actual designated companies compared to those whose designation was postpon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e-effect of introducing a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s improved the audit quality of a long-term continuous auditor. As the system implementation is nearing, it shows that independence, which has been degraded by long-term continuous audits, can be improved ; and audit quality can be maintained above a certain level within the future replacement cycle. It also presents major considerations in operating the system by presenting differences in qualit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auditors.

<Key words>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Quality, Independence, Non-Big 4, Discretionary Accruals